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2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이연희 · 송재봉 · 김정호
이춘석 · 이광희 · 문진석
임미애 · 이정문 · 복기왕
박홍배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

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u><신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특별</u>

<u><신 설></u>	<u>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u>
---------------------------	---